

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

- 제 1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대신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(목적)** 위원회는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제 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5조(임기)**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제 6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1. 장·단기 정보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2. 정보화 관련 주요장비 및 시설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
3. 교육, 행정업무 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 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 8조(결과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9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.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간사)** ①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11조(비밀의 유지)**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